

나고야의정서의 국제동향과 대응방안¹⁾

김 필 수²⁾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나고야의정서란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 시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본 의정서는 유전 자원의 이용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 문제 등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서 정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며, 줄여서 ABS라 부르기도 한다.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범위는 그 정식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은 나고야의정서가 탄생한 기본 전제이자 궁극적 목적이 담긴 국제 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1993년 정식 발효)하였다. 해당

협약의 목표는 종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보존이다. 당시 국제 사회는 냉전 종식 후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지향점이 필요했으며, 이 가운데 생물자원이 인류에 제공하는 가치와 그 중요성에 초점을 둔 협약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 총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고, 제10차 회의의 결과물이 바로 나고야의정서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다른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용에 따른 이익 발생 시 생물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생물자원의 이용 국가와 제공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OECD의 정의에 따른 생물자원이란 현재 인류에게 가치를 제공하거나 미래에 가치를 제공할 잠재 조건을 가진 생물체와 유전자 정보를 의미한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에서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일부는 범위가 제한된 동시에 일부는 보다 확장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한 토착민의 전통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물자원은 아니지만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에는

1)International Trend in Nagoya Protocol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2)KIM, Pilsoo, A Senior Researcher of Hyundai Research Institute; E-mail: pskim@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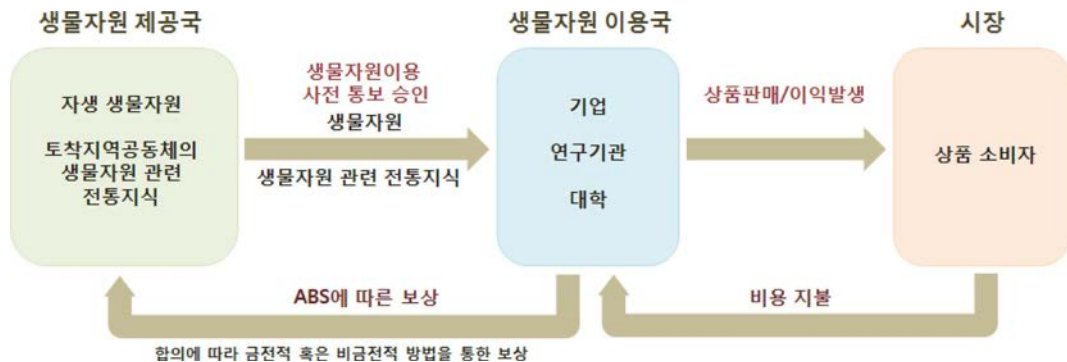
포함된다. 한편, 보통의 생물자원 개념 중에서도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분 역시 있는데, 이는 크게 자원의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국가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와 협약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인류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해(公海)나 남극에서 기원한 생물자원은 특정 국가가 원산지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예이다. 이밖에 인간의 유전체 역시 제외 대상인데, 인간은 지구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생명체로서 이 역시 원산국을 한정하기 어렵다. 반면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포함된 주요 곡물, 과일, 채소 등의 64개 작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생물자원이 이미 전 세계 인류의 주식(主食)으로 자리 잡고 있어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당 협약은 인류 혹은 생태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나고야의정

서의 이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전염병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절차보다는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용과 보상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먼저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원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될 경우 자원의 소유권자와 승인권자에게 이용의 목적과 이후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 자원의 종류에 따른 특징과 양, 이익 배분의 방법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자원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게 되며, 향후 해당 자원의 이용 권리와 이익 배분 책임을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거나 자원의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합의의 변경도 가능하다.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경우 원산 국가와 이익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나고야의정서가 정식 발효되지 않았고 관련 정보의 사회적 공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익 배분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익 배분은 금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생물자원 이용 및 보상 체계>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자료: 김필수, 2011, '종(種)의 전쟁'이 시작된다 - 생물자원 무기화 시대의 개막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1-31.

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나고야의정서에는 이익 배분은 금전적 보상을 통할 수도 있지만 자원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연구 참여, 기술 이전, 교육 등 비금전적 보상 역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오해는 이익 배분은 곧 금전적 보상이라는 고정 관념과 자원 제공자들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자원 제공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생물자원을 통한 직접적 수익 창출에 보다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생물자원이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2014년 발효가 예상되는 나고야의정서를 기점으로 우리가 생물 역시 석유나 철광석처럼 중요한 자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이면, 새로운 자원 전쟁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된다는 것은 생물자원이 곧 상품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국 내에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이익이 발생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즉,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의식이 고취되는 것이다. 이는 산유국들이 국제 석유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를 축적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타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다. 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입장 사이의 간극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나고야의정서는 채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

통이 있었고, 채택 이후 현재까지도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10월 채택 이후 2011년 9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이 동의 서명을 함으로써 동의 국가가 50개국을 넘어섰다. 당시만 해도 나고야의정서는 국제 협약 가운데 채택 이후 정식 발효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늦어도 2013년 내에 발효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가 비준을 하면 그날부터 50일 이후에 발효된다. 따라서 이미 50개 국가 이상이 동의했으니, 이들 국가의 국내 비준 절차만 남았던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준 국가는 50개국을 넘지 못하고 있다.(2013년 8월 3일 현재 18개국이 비준)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2010년, 2011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던 시점이다. 이때는 각국 정부가 경제 문제 외에 환경, 생물 등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오히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 유럽 재정 위기부터 최근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출구 전략,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이 국제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환경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생물자원 이용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식 발효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달가울 리 없다. 현재 비준이 이루어진 국가들을 보더라도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생물자원 제공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를 둘러싼 생물자원 전쟁은 자원 부국과 자원 빈국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대립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세계적인 생물자원 부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다. 하지만 미국, 호주 등 선진국 역시 생물자원 부국에

<생물자원부국의 1인당 GNI 분포>
<Per Capiata GDPs of Megadiverse countries in US Dollars>

	5천 달러 미만	5천~1만 달러	1~2만 달러	2만 달러 이상
국가	콩고,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페루,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미국, 호주

자료: UNEP, Conservation International, UN Statistics Division.

주: 1) 2011년 명목 기준

2) 생물자원부국에는 Conservation International 및 UNEP가 분류하고 있는 생물자원부국(Megadiverse countries) 17개국과 생물자원부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LMMC(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에 가입한 3개국을 포함

포함되고, 이들 국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있다. 이는 각국의 산업 및 기술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재 생물자원은 대부분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바이오 산업 등에서 활용되며, 선진국 국민들이 이들을 주로 개발하고 소비한다.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는 선진국의 비용 증대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LMMC (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라는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선진국에 대항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LMMC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상회하는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생물자원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세계적인 생물자원 부국임에도 자국 산업의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아 나고야의정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의 모태가 되는 생물다양성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 나고야의정서를 포함한 생물다양성협약은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국의 유불리에 따른 상이한 태도가 담겨있다. 본래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은 상대

적으로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며 199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내용을 포함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략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각 국가가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정도로 국제 협약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교토의정서 역시 각국이 상이한 주장을 펼치면서 채택 이후 비준까지 8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채택 이후 세부 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는 것에만 23년이 걸렸다는 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다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구의 환경보존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두 개의 협약이 다른 진행 속도를 보인 것은 협약의 결과에 따른 수혜자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술 및 산업은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앞서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제조업에 대한 경제 비중이 작고,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개발 수요가 크지 않다. 결국 선진국의 입장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구체화되어 새로운 규제가 생겨도 손해가 크지 않다. 오히려 자국이 보유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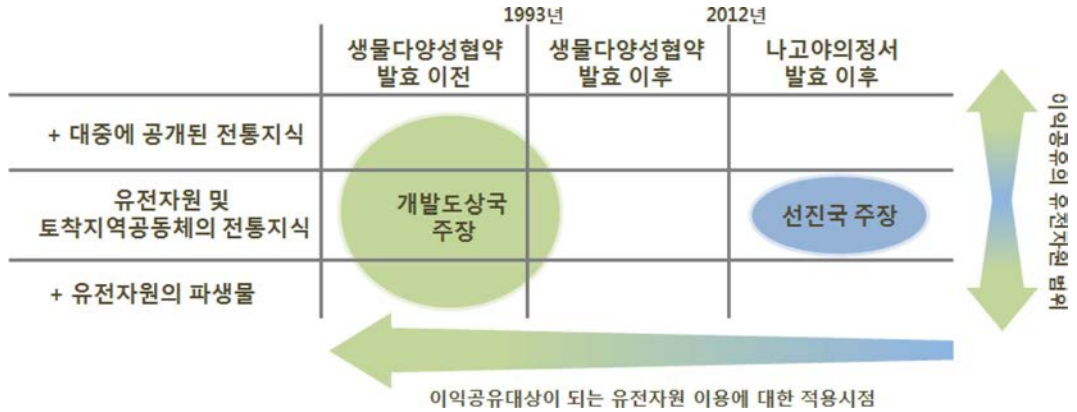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건에서 생산된 개발도상국의 제품을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을 빠르게 진행시켰다. 하지만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다.

특히 나고야협약의 경우 아직 세부 기준들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대립 현안은 크게 적용 범위와 적용 시점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자원 이용자들은 범위와 시점의 축소를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자원 제공자들은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적용 범위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생물자원 자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자원 제공국은 생물자원의 범위에 생물의 대사 활동 등으로 생겨나는 파생물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에 비해 자원 이용국 측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형국이다. 사실 제약 산업 등에서 생물자원을 이용 시 자원 그 자체보다는 파생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제약사를 보유한 선진국들로서는 적용 범위의 축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 중국은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를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확장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이 발달한 중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다. 사실상 한의학은 대부분 생물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으로서 이 같은 범위의 확장은 자원 제공국으로서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시점 역시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데, 자원 제공국들은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1993년 이전부터라도 생물자원의 이용 및 이익 발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여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원 제공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들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의 생물자원이 선진국의 기업에게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이 주를 이루는 자원 이용국들은 적용 시기를 나고야협약의 발효 시점(2014년 예상)으로 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적용 시점에 대한 양측의 대립 현안으로는 생물자원의 제공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자원의 보유 시점 문제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생물자원을 반출하여 자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경우 어느 나라가 자원의 제공국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남는다. 개발도상국들은 당연히 생물자원의 원산국만이 나고야협약의 제공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선진국들은 생물자원의 제공국이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자원을 보유한 국가라면 나고야협약의 제공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적용 시점에 따라 각 국가의 발생 이익과 비용 차이가 큰 만큼,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으로 들여 온 생물자원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생물자원과 관련된 대립은 다른 형태의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공세라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주장>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rguments about Nagoya Protocol and Developing Countries' Arguments about it>



자료: 김필수, 2011, '종(種)의 전쟁'이 시작된다 - 생물자원 무기화 시대의 개막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1-31.

지난 수 세기동안 선진국들은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금, 농산물 등의 자원을 낮은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진 유전 개발 역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값싸게 이용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이용 및 이익 공유가 실제 자원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이용 권리에 따른 비용 지불이라는 점에서 이용 권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특허권을 포함한 라이선스는 선진국이 보유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는 점을 볼 때,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생물자원의 이용 권리에 대한 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의정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 현재의 대립을 또 다른 자원전쟁의 형태로 보면, 생물자원 전쟁은 광물을 비롯한 기존 자원전쟁과 자원의 개념이나 목

적 등에 있어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물자원전쟁에서의 자원은 그 자체의 매매와 이용이 아니라 이용 권리의 매매를 의미한다. 즉, 해당 생물자원이 멸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자원 제공자의 이익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석유나 광물 자원들처럼 매장량이 유한하여 언젠가는 이익이 소멸된다는 기본 전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농산물이나 임산물, 수산물과 같이 사육이나 재배 등 생산이 반복되어 이익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거래량은 유한한 자원과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자원전쟁의 목적은 자원 제공국과 자원 이용국들이 서로 이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자원들이 자원 자체의 확보를 위해 갈등을 일으켰던 사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자원의 접근 권리 측면에서 보면 더욱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기존 자원들은 공급자가 임의로 수요측 파트너를 선택하고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생물자원의 경우에는 이용국가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익 공유의 약

<기존 자원전쟁과 생물자원전쟁의 차이>
<Differences among Resources Wars>

기존 자원(광물 등)		생물자원
목적	자원 확보	자원 이용권 범위 확대 혹은 축소
주요 당사자	자원이용국 對 자원이용국	자원이용국 對 자원제공국(선진국 對 개발도상국)
거래 대상	유형(자원 자체)	무형(자원 이용 권리)
이용가능량	유한(매장량 혹은 생산량)	무한(멸종하지 않는다는 가정 시)
확보 방법	구매, 탐사 및 개발 등	협약 대상 범위의 확대 혹은 축소, 자원 정보 발굴(유전 정보)
자원 접근권	급국가가 판매 대상 국가를 제한 및 선택 가능	자원 이용국은 절차에 따라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

자료: 김필수, 2011, ‘종(種)의 전쟁’이 시작된다 - 생물자원 무기화 시대의 개막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1-31.

속을 이행한다면 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과 대응 방안

생물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또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부상하는 현재, 한국의 입장은 선진국의 측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면적이 넓지 않아 다양한 기후 및 자연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다. 이는 국토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열세임을 의미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자생 생물은 36,921종이다. 이는 넓은 국토를 가진 중국(8.8만 종)이나 해양 및 열대 기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5.6만 종)는 물론 일본(9만 종)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결국 한국은 생물자원에 있어서도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부족국가라 할 수 있으며,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 역시 높다. 자연스럽게 선진국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생물자원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나고야의정서의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에 더욱 적극적인 노

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해외에서 생물자원의 이용 권리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존재하는 자원의 정보를 발굴 및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과 같이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기에 외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한국에서 다량의 생물을 채집하여 가져갔다. 그 결과, 한국의 자생종이 외국에 등록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에서 한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결국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다.

이밖에 국가 차원의 협력 역시 중요하다. 한국은 생물자원의 수입국으로서 생물자원 부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생물자원부국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이 이들 국가와 생물자원에 있어 관계를 이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생물자원부국에 가서 공동으로 조사 및 발굴 작업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생물자원의 이용 권리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역시 생물자원전쟁에 있어 관심을 갖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발생하는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한 쪽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한 쪽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는 곧, 시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기업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기회 역시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물자원과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고, 국내외 지역 사회나 NGO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물자원전쟁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